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4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 안호영 · 윤준병 · 정을호

박희승 • 이병진 • 박홍배

이학영 · 이춘석 · 이원택
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상조류, 적조현상, 해파리의 대량발생, 태풍, 해일, 이상수온,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있음.

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, 이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 정하고, 이를 어업재해로도 규정하여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 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어업재해의 사유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 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

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43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이상수온(異常水溫)"을 "이상수온(異常水溫)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 수 방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"어업재해"란 이상조류(異常	3		
潮流), 적조현상(赤潮現象),			
해파리의 대량발생, 태풍, 해			
일, <u>이상수온(異常水溫)</u> , 그	<u>이상수온(異常水溫),</u>		
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		
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	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		
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	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		
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			
시설의 피해를 말한다.			
4. ~ 13. (생 략)	4. ~ 13. (현행과 같음)		